



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(1)

일 시: 2013년 08월 12일 (월) 14:00
장 소: 백주년기념관 2층 소회의실
참 석 자: 정광호(위원장), 권오달(서기), 강태진, 고장혁, 신승복, 유구용, 이상진, 정수목, 홍일진
첫 기 도: 묵상

연위 13-01-01.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변경 결의

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결의함.

현행	개정안	비고
제3조 (용어의 정의)	제3조 (용어의 정의) ⑦ “실험폐액” 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(폐산, 폐알칼리, 폐유기용제 등)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. ⑧ “의료폐기물” 이라 함은 보건·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·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,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·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.	제3조의 7,8항 신설
제5조 (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) ④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	제5조 (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)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	제5조의 4항 수정
제16조 (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) ①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실험폐액을 실험폐액 분별수집 및 처리지침에 의거 수집하여야 하며, 수집된 폐액은 시설과 그 처리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	제16조 (실험폐액과 의료폐기물의 처리) ①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(연구활동종사자)는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(별표 제1호 참조). ②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. ③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.	제16조의 1,2,3항 수정 및 신설, 별표1 신설

연위 13-01-02. 연구실 안전점검 위탁 승인

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위탁을 결의함.

- 장소: 제1, 2, 3과학관 등 연구실 (65개 연구실 및 실험·실습실)
- 견적가격: 4,400,000원 (부가세 포함)
- 위탁업체: (주)누리&소방

끝기도 : 권오달

의 장 정 광 호
서 기 권 오 달